

「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」 간담회 자료

-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('10.10.29)-

1. 법률 제정 필요성

- 현행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신·변종 성매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.
- 현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인·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등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
 - 설치근거 법령이 없는 자유업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,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
- 최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자유업종 형태에서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,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미비한 상태임.
- 자유업형태의 신·변종업소는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·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,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, 해당 업소에서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등 영업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임.
- 이 법 적용 대상의 영업소는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개별법에 의

한 인·허가를 받은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업소를 제외하고

-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업소를 포함하고 있어, 휴게텔, 키스방 등 자유업 형태의 신·변종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근절을 위한 입법의 실효성이 기대됨.

<신·변종 자유업종(예시)>

키스방, 유리방, 출장마사지, 보도방, 휴게텔, 스포츠마사지, 피부마사지, 여대생마사지(대딸방), 하드방, 전화방, 화상방, 이미지클럽, 파티시름, 스타킹클럽, 멀티방, 인형방 등

2. 정의(안 제2조)

- “영업소”를 ‘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신고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’로 규정하고 있음.

⇒ ‘영업소’는 이 법상 규제 대상으로서 ‘장소’ 보다는 ‘시설’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사례 :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

- "집단급식소"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3. 적용범위(안 제3조)

- 「식품위생법」·「공중위생관리법」·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업정지, 영업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(붙임 : 개별 법령의 성매매관련 행정처분 현황)

4. 법률안의 주요 내용 검토

① 준수사항(안 제4조)

- 영업자(영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용자·종업원·대리인 그 밖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
-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금지행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시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- ⇒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금지행위.....
 1. 성매매
 2. 성매매알선등행위
 3.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
 4.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·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·알선하는 행위
 5. 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

② 영업소 출입(안 제6조)

- “경찰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(제1항).

⇒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련 금지행위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**필요한 규정**이며 **입법사례**도 있음.

※ 사례 :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(출입) 제1항

-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폐쇄명령 등(안 제7조)

-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행정관청”이라 한다)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.

⇒ 성매매의 **사회적 심각성 등을 고려, 행정처분 기준을 좀더 강화할 필요**가 있음.(1차 적발시 영업소 폐쇄)

※ 법률에서 성매매업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할 경우

- 1차 적발 시 1~3월 영업정지, 2차 적발시 2~3월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.(붙임: 개별 법령의 성매매 행정처분 현황)

④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(신설)

-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폐쇄조치를 당한 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필요

⇒ ①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폐쇄조치를 당한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는 영업소 폐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.

②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가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.

※ 사례 :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4(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)

- ①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·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청소년보호법」(이하 이 조에서 "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등"이라 한다)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2항에서 같다)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.
- ③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.

5. 부칙(안 제1항)

-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.
- 이 법 공포 후 하위법령의 제정 등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 있음.

붙임 : 개별 법령의 성매매관련 행정처분 현황

<붙임> **개별법령의 성매매관련 행정처분 현황**

업종	적용법령	세부업종	유형	처분사유	처분기준 (1/2/3차)
식품 접객업	식품위생법 제75조 ① 18호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 II. 3항 14호	휴게 음식점	티켓다방	· 성매매처벌법 제 4조 금지행위 위반	영업정지 1월/ 영업정지 2월/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
		일반 음식점	방석집		
		단란 주점	단란/ 유흥주점		
		유흥 주점	단란/ 유흥주점		
공중 위생영업	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① 시행규칙 제19조 [별표 7] II. 1항 2호 나목 II. 2항 2호 가목 II. 3항 3호 가목 II. 4항 3호 가목	숙박업 · 목욕 장업	여인숙 여관 모텔 사우나	· 성매매처벌법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	영업정지 2월/ 영업정지 3월/ 영업장 폐쇄/ 영업정지 2월/ 영업정지 3월/ 영업장 폐쇄/ 면허정지 2월/ 면허정지 3월/ 면허취소 (아·미용사)
		이용업 · 미용업	이발관 이용원 미용원		
노래 연습장업	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① 5호 제27조 ① 5호 시행규칙 제15조 ① [별표 2] 2항 마호 7	노래연 습장업	노래연 습장	· 성매매처벌법 제 2조 제1항에 따 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 거나, 알선·제 공하는 행위	등록취소 영업폐쇄
비디오물 시청제공 업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② 6호 시행규칙 제26조 ① [별표4] 2. 카	비디오 물감상 실업	비디오 감상실	· 성매매처벌법 제 2조 제1항에 따 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 거나, 알선·제 공하는 행위	영업정지 3월/ 등록취소